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1314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최윤정

변론 종결2021. 3. 30.

판결 선고2021.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5.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등기소 2020. 5. 4. 접수 제45619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에 대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2020. 5. 1.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0.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9. 10.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후 피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단순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피고와 D가 혼인생활 중 가지고 있었던 공동재산의 분배,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거나 단지 재산분할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와 D는 1993. 9.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1993년생 여, 1997년생 남) 두었다가 2019. 10. 18. 협의이혼신고를 마쳐 이혼하였는데, 그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2020. 4. 2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1. 피고와 D사이 장녀의 부양과 간호는 2020. 5. 1.부터 피고가 전적으로 맡기로 하고, D는 이 사건 건물에서 바로 퇴거하며 추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2. D는 혼인기간 내 금전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이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3. 피고는 D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D에게 위자료를 구하지 않기로 하고, D는 피고가 앞으로 장녀를 부양하는 것을 고려하여, 피고가 D 및 그 부모 명의로 불입하던 각 주택청약통장을 인도받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재산분할에 갈음하기로 하고, 그 외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대신 피고 역시 향후 장녀 부양에 필요한 병원비, 생활비 등을 D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4. 피고와 D는 위와 같이 합의하고, 향후 서로 간에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D는 향후 어떠한 이유로든 피고에게 자신 명의 부채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상환에 필요한 돈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위와 같이, 위 합의서는 장애가 있는 장녀(성년에 이르렀긴 하나,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으로서 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의 부양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 피고와 D의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관계 등을 모두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서 체결된 것이다.

③ 피고는 2004. 9. 17. 이 사건 건물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아 2004.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7. 8. 7. D에게 증여하면서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2)를 마쳤으며, 그 후 2018. 2. 12.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를 말소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와 이혼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D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D가 단독으로 소유하던 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그 재산 형성에 있어 피고가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D는 혼인기간 중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조합, A 주식회사 등에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대출금의 대출 시점, 대출 실행 횟수 및 그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대출금들이 전부 피고와 D의 일상가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D가 개인적인 용도로 위와 같은 대출을 받아 소비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D도 인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⑤ 아울러, 위 대출금 중 상환된 것의 상당 부분은 피고의 근로소득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서에 의하면 D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단순히 일체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위자료 지급의무 면제, 주택청약 통장에 대한 권리 확보, 피고의 장녀 부양료 청구권 포기 등 일정 부분 재산상 이익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사실상 D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전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와 D 사이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유용

별지

1)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별지가 누락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택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5. 1.자 혼동을 원인으로 2020. 7. 17. 말소등기가 마쳐졌다.